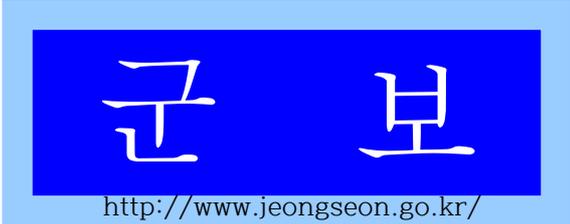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7호 2022. 10. 5.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26호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1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091호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34
- 정선군 공고 제2022-1092호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72
- 정선군 공고 제2022-11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78
- 정선군 공고 제2022-1113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
- 정선군 공고 제2022-1130호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86

- 정선군 공고 제2022-1136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87
- 정선군 공고 제2022-1137호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08
- 정선군 공고 제2022-1143호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11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118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2호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2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3호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3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4호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4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5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147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6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15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7호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84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8호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5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9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의여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21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0호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1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2호 공인 신조 공고.....22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3호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2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26호

##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고시 제2022-318호(2022.9.8.)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정 선 군 수

###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고한읍 일원
- 면 적: 지역개발사업구역 - (기정) 8,961,500㎡ → (변경) 7,017,177㎡  
실시계획 - (기정) 6,612,943.3㎡ → (변경) 6,719,605.3㎡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6년 4월 ‘관광지역개발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2015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경과조치(정선군고시 제2018-219호)되어 관리되었으며 2021년 7월 지역개발계획(강원도고시 제2021-289호)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면적과 적합하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축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역 분할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폐광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기간: (기정) 1998년 ~ 2021년 → (변경)1998년 ~ 2026년

###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주)강원랜드 이삼걸(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게재생략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7,017,177.0	100.0	
체육시설구역	소계	5,489,802.0	78.2	
	관광휴양시설용지	889,376.8	12.7	
	체육시설용지	506,477.0	7.2	
	공공시설용지	105,774.3	1.5	
	녹지용지	3,988,173.9	56.8	
마운틴콘도구역	소계	276,845.0	4.0	
	관광휴양시설용지	105,326.6	1.5	
	공공시설용지	87,735.9	1.3	
	녹지용지	83,782.5	1.2	
힐콘도 및 밸리콘도구역	소계	312,058.0	4.4	
	관광휴양시설용지	123,311.1	1.8	
	공공시설용지	82,043.7	1.1	
	녹지용지	106,703.2	1.5	
카지노호텔구역	소계	465,544.0	6.6	
	관광휴양시설용지	291,644.0	4.2	
	공공시설용지	42,073.4	0.5	
	녹지용지	131,826.6	1.9	
동화의 숲 구역	소계	125,658.0	1.8	
	관광휴양시설용지	22,733.4	0.3	
	녹지용지	102,924.6	1.5	
탄광문화공원구역	소계	195,472.0	2.8	
	관광휴양시설용지	99,936.0	1.4	
	공공시설용지	34,530.0	0.5	
	녹지용지	61,006.0	0.9	
플라워가든구역	소계	151,798.0	2.2	
	관광휴양시설용지	55,256.5	0.8	
	공공시설용지	11,826.8	0.2	
	녹지용지	84,714.7	1.2	

##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사업구역을 7개의 구역으로 분할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7,017,177.0	
① 체육시설구역	5,489,802.0	기조성
② 마운틴콘도구역	276,845.0	기조성
③ 힐콘도 및 밸리콘도구역	312,058.0	기조성
④ 카지노호텔구역	465,544.0	기조성(일부 진행 중)
⑤ 동화의 숲 구역	125,658.0	
⑥ 탄광문화공원구역	195,472.0	금회 실시계획승인
⑦ 플라워가든구역	151,798.0	

##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게재생략

## 8. 자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게재생략

## 9.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별첨 1]

## 10.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별첨 2]

## 11. 지형도면고시 : 게재생략(정선군 전략산업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12.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및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3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합계		547필지	-	21,996,216.3	7,017,177.0	-	-		
1	고한리	124-43	대	935.0	9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	고한리	124-50	도로	42.0	42.0	정선군	-		
3	고한리	124-52	도로	30.0	30.0	정선군	-		
4	고한리	124-56	대	130.0	1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	고한리	124-58	대	167.0	1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	고한리	124-59	대	255.0	2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	고한리	124-61	대	101.0	10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	고한리	124-62	대	343.0	3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	고한리	124-63	잡	3,181.0	3,18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	고한리	124-71	대	113.0	11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1	고한리	124-72	대	103.0	10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	고한리	124-74	대	161.0	16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3	고한리	124-75	대	221.0	22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	고한리	124-76	임	60.0	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	고한리	124-78	임	517.0	51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	고한리	124-79	임	77.0	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	고한리	124-80	임	582.0	58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	고한리	124-81	임	254.0	25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	고한리	124-82	임	85.0	8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0	고한리	124-83	임	181.0	18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1	고한리	124-84	도로	697.0	697.0	정선군	-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22	고한리	124-85	도로	348.0	348.0	정선군	-		
23	고한리	124-86	임	281.0	28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	고한리	124-87	임	274.0	27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	고한리	124-88	임	280.0	28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	고한리	124-89	임	1,115.0	1,1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	고한리	124-91	임	151.0	15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	고한리	124-92	임	117.0	11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	고한리	124-93	임	161.0	16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	고한리	124-94	임	98.0	9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	고한리	124-95	임	95.0	9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	고한리	124-96	임	86.0	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	고한리	124-97	임	83.0	8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	고한리	124-98	임	258.0	25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	고한리	124-99	임	86.0	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	고한리	124-100	임	164.0	16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	고한리	124-101	임	726.0	7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	고한리	124-102	임	1,273.0	1,27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	고한리	124-103	임	581.0	58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	고한리	124-104	임	117.0	11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	고한리	124-105	도로	12.0	12.0	정선군	-		
42	고한리	124-110	도로	43.0	43.0	정선군	-		
43	고한리	124-111	임	50.0	5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	고한리	124-112	임	204.0	20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5	고한리	124-113	도로	75.0	7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정선군	-		
46	고한리	124-114	임	435.0	4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	고한리	124-115	임	51.0	5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	고한리	124-116	임	191.0	19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	고한리	124-117	임	206.0	2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	고한리	124-118	임	560.0	5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	고한리	124-119	도로	657.0	657.0	정선군	-		
52	고한리	124-120	임	18.0	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	고한리	124-121	임	943.0	9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	고한리	124-122	임	2,541.0	2,54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5	고한리	124-126	임	217.0	21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6	고한리	124-127	임	13.0	1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7	고한리	124-128	임	67.0	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8	고한리	124-129	임	303.0	30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9	고한리	124-130	임	5.0	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0	고한리	124-131	임	40.0	4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1	고한리	124-139	대	56.0	5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2	고한리	124-140	임	106.0	1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3	고한리	124-149	임	571.0	57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4	고한리	124-150	임	29.0	2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5	고한리	124-151	임	349.0	34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6	고한리	124-152	임	1,155.0	1,1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67	고한리	124-153	임	988.0	9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8	고한리	124-154	임	351.0	35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69	고한리	124-155	임	1,785.0	1,78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0	고한리	124-156	임	9.0	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1	고한리	127-6	전	2,459.0	2,45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2	고한리	127-9	전	1,055.0	1,0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3	고한리	127-11	임	4,335.0	4,3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4	고한리	127-41	임	189.0	1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75	고한리	127-42	도로	205.0	205.0	정선군	-		
76	고한리	127-43	도로	3,126.0	3,126.0	정선군	-		
77	고한리	127-44	도로	1,064.0	1,064.0	정선군	-		
78	고한리	127-45	도로	48.0	48.0	정선군	-		
79	고한리	127-46	임	2,596.0	2,5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0	고한리	127-47	전	179.0	17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1	고한리	127-50	전	151.0	15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2	고한리	127-51	전	611.0	61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3	고한리	127-53	전	876.0	87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4	고한리	129	전	2,980.0	2,98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5	고한리	129-1	임	3,660.0	3,6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6	고한리	130	대	506.0	5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7	고한리	130-1	대	470.0	47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8	고한리	130-2	대	241.0	24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89	고한리	130-3	대	715.0	7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0	고한리	130-4	대	4,908.0	4,9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91	고한리	130-38	대	11,249.0	11,24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2	고한리	130-56	대	190.0	1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3	고한리	130-57	대	2,148.0	2,1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4	고한리	130-58	대	1,952.0	1,95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5	고한리	130-68	대	300.0	3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6	고한리	130-69	대	144.0	14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7	고한리	130-70	대	52.0	5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8	고한리	130-71	대	408.0	4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99	고한리	131-3	잡	1,378.0	1,37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0	고한리	144-15	전	46,378.0	46,37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1	고한리	301	대	235.0	2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2	고한리	301-1	대	113.0	11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3	고한리	301-2	대	277.0	2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4	고한리	301-3	대	235.0	2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5	고한리	301-4	대	484.0	4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6	고한리	302	대	208.0	2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7	고한리	302-1	대	160.0	1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08	고한리	306	도로	1,820.0	1,820.0	정선군	-		
109	고한리	307	도로	16,457.1	16,457.1	정선군	-		
110	고한리	312	체	1,869.4	1,869.4	정선군	-		
111	고한리	314	유	4,554.7	4,554.7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12	고한리	320	체	3,465.4	3,465.4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13	고한리	378	체	279.3	279.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114	고한리	381	체	587.8	587.8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15	고한리	382	도로	579.2	579.2	정선군	-		
116	고한리	384	전	14,328.0	14,32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17	고한리	387	도로	37.0	37.0	국(국토해양부)	-		
118	고한리	388	도로	477.4	477.4	정선군	-		
119	고한리	388-1	도로	64.0	6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0	고한리	389	도로	323.8	323.8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1	고한리	390	체	56,772.3	56,772.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2	고한리	391	체	2,515.4	2,515.4	정선군	-		
123	고한리	392	도로	6,078.1	6,078.1	정선군	-		
124	고한리	393	체	7,247.2	7,247.2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5	고한리	393-1	수	2,601.0	2,60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6	고한리	394	수	10,432.0	10,4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27	고한리	395	체	1,295.3	1,295.3	정선군	-		
128	고한리	396	체	1,080.0	1,080.0	국(건설부)	-		
129	고한리	397	체	107.1	107.1	국(환경부)	-		
130	고한리	397-1	체	47.1	47.1	국(건설부)	-		
131	고한리	398	도로	158.9	158.9	국(건설부)	-		
132	고한리	399	도로	98.4	98.4	국(환경부)	-		
133	고한리	400	도로	155.8	155.8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34	고한리	401	도로	201.1	201.1	국(환경부)	-		
135	고한리	402	체	2,341.3	2,341.3	국(환경부)	-		
136	고한리	403	체	9,205.1	9,205.1	국(환경부)	-		
137	고한리	404	체	1,214.9	1,214.9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38	고한리	405	체	151,013.1	151,013.1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39	고한리	406	임	7,504.2	7,504.2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0	고한리	407	임	1,997.8	1,997.8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141	고한리	408	체	466.6	466.6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2	고한리	409	임	728.7	728.7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3	고한리	410	임	4,103.6	4,103.6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4	고한리	411	도로	13,777.1	13,777.1	정선군	-		
145	고한리	412	체	6,826.2	6,826.2	정선군	-		
146	고한리	413	체	486.6	486.6	정선군	-		
147	고한리	414	체	1,258.3	1,258.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8	고한리	415	임	5,429.4	5,429.4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49	고한리	416	체	352,285.0	352,28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0	고한리	417	체	44,565.6	44,565.6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1	고한리	418	임	27,090.0	27,0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2	고한리	419	체	8,590.3	8,590.3	정선군	-		
153	고한리	420	임	9,053.3	9,053.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4	고한리	421	임	8,519.3	8,519.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5	고한리	422	임	4,708.0	4,7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6	고한리	423	임	37,123.9	37,123.9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7	고한리	424	대	23,663.7	23,663.7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8	고한리	425	도로	2,669.1	2,669.1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59	고한리	426	차	15,261.3	15,261.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0	고한리	427	체	12,021.1	12,021.1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1	고한리	428	체	3,509.3	3,509.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2	고한리	429	체	1,855.1	1,855.1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3	고한리	430	임	1,623.4	1,623.4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4	고한리	431	체	34,627.5	34,627.5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165	고한리	432	체	15,381.6	15,381.6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6	고한리	433	체	161,770.7	161,770.7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7	고한리	433-1	체	1,740.0	1,74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8	고한리	434	잡	1,808.2	1,808.2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69	고한리	435	임	16,273.3	16,273.3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0	고한리	436	임	3,605.0	3,60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1	고한리	437	체	75.9	75.9	정선군	-		
172	고한리	438	전	19,696.0	19,6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3	고한리	439	전	9,332.0	9,3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4	고한리	산1-124	종교	3,357.0	3,3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5	고한리	산1-140	임	1,073.0	1,07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6	고한리	산1-164	임	1,007.0	1,00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7	고한리	산1-166	임	416,333.0	416,33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8	고한리	산1-167	임	141,974.0	141,97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79	고한리	산1-204	임	1,490.0	1,4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0	고한리	산1-205	임	649.0	64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1	고한리	산1-206	임	508.0	5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2	고한리	산1-218	임	1,086.0	1,0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3	고한리	산1-219	임	1,264.0	1,26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4	고한리	산1-226	임	401,162.0	22,658.7	국(산림청)	-		
185	고한리	산1-229	임	76,341.0	2,977.0	국(산림청)	-		
186	고한리	산1-230	임	9,343.0	9,3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7	고한리	산1-233	임	16,121.0	16,12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188	고한리	산1-234	임	47,788.0	47,7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89	고한리	산1-235	임	5,193.0	5,19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0	고한리	산1-236	임	3,777.0	3,7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1	고한리	산1-237	임	4,965.0	4,96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2	고한리	산1-238	임	6,388.0	6,3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3	고한리	산1-239	임	233,422.0	233,42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194	고한리	산1-241	임	91,506.0	91,506.0	국(산림청)	-		
195	고한리	산1-242	임	571,885.0	571,885.0	국(산림청)	-		
196	고한리	산1-243	임	43,782.0	43,782.0	국(산림청)	-		
197	고한리	산1-247	임	234,100.0	234,100.0	국(산림청)	-		
198	고한리	산1-248	임	41,847.0	41,847.0	국(산림청)	-		
199	고한리	산1-249	임	88,779.0	88,779.0	국(산림청)	-		
200	고한리	산1-251	임	51,228.0	51,228.0	국(산림청)	-		
201	고한리	산1-252	임	28,854.0	28,854.0	국(산림청)	-		
202	고한리	산1-253	임	79,211.0	79,211.0	국(산림청)	-		
203	고한리	산1-254	임	56,320.0	56,320.0	국(산림청)	-		
204	고한리	산1-255	임	209,561.0	209,561.0	국(산림청)	-		
205	고한리	산1-256	임	23,475.0	23,475.0	국(산림청)	-		
206	고한리	산1-257	임	38,936.0	38,936.0	국(산림청)	-		
207	고한리	산1-258	임	16,430.0	16,430.0	국(산림청)	-		
208	고한리	산1-259	임	106,858.0	106,858.0	국(산림청)	-		
209	고한리	산1-260	임	7,736.0	7,736.0	국(산림청)	-		
210	고한리	산1-261	임	41,049.0	41,049.0	국(산림청)	-		
211	고한리	산1-262	임	37,938.0	37,938.0	국(산림청)	-		
212	고한리	산1-263	임	213,924.0	213,924.0	국(산림청)	-		
213	고한리	산1-264	임	68,496.0	68,496.0	국(산림청)	-		
214	고한리	산1-266	임	38,311.0	38,311.0	국(산림청)	-		
215	고한리	산1-267	임	15,185.0	15,185.0	국(산림청)	-		
216	고한리	산1-268	임	16,967.0	16,967.0	국(산림청)	-		
217	고한리	산1-269	임	113,778.0	113,778.0	국(산림청)	-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218	고한리	산1-270	임	17,401.0	17,40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19	고한리	산1-271	임	210.0	21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20	고한리	산1-272	임	489.0	4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21	고한리	산1-273	임	32,706.0	32,706.0	국(산림청)	-		
222	고한리	산1-274	임	113.0	113.0	국(산림청)	-		
223	고한리	산1-275	임	13,027.0	13,027.0	국(산림청)	-		
224	고한리	산1-276	임	51.0	51.0	국(산림청)	-		
225	고한리	산1-277	임	39,764.0	39,76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26	고한리	산1-278	임	177.0	177.0	국(산림청)	-		
227	고한리	산1-279	임	1,178,239.0	1,178,239.0	국(산림청)	-		
228	고한리	산1-299	임	4,260.0	4,260.0	국(산림청)	-		
229	고한리	산1-300	임	8,698.0	8,698.0	국(산림청)	-		
230	고한리	산1-301	임	7,579.0	7,579.0	국(산림청)	-		
231	고한리	산1-302	임	1,129.0	1,12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32	고한리	산1-303	임	26,610.0	26,61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33	고한리	산286	임	397.0	397.0	국(기획재정부)	-		
234	고한리	산287	임	7,332.0	7,332.0	국(기획재정부)	-		
235	고한리	산287-1	임	2,288.0	2,288.0	국(기획재정부)	-		
236	고한리	산289-1	구거	167.0	1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37	고한리	산289-6	구거	12,548.0	12,5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38	고한리	산290-1	철도	28.0	2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39	고한리	산290-7	철도	41.0	4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0	고한리	산336	임	109,526.0	31,474.0	국(산림청)	-		
241	고한리	산337	임	17,492.0	17,49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2	고한리	산338	임	19,558.0	19,55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3	고한리	산344	임	2,130.0	2,1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4	고한리	산345	임	3,384.0	3,3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245	고한리	산346	임	1,436.0	1,43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6	고한리	산347	임	16,515.0	16,5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7	고한리	산348	임	31,390.0	31,3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48	고한리	산349	임	37,144.0	37,144.0	국(산림청)	-		
249	고한리	산350	임	73,726.0	73,726.0	국(산림청)	-		
250	고한리	산351	임	55.0	55.0	국(산림청)	-		
251	사북리	357-4	철도	10.0	1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2	사북리	358	대	2,502.0	2,5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3	사북리	358-1	대	337.0	3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4	사북리	358-2	임	924.0	9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5	사북리	358-3	대	657.0	6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6	사북리	358-4	대	581.0	58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7	사북리	358-5	임	4,831.0	4,83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8	사북리	358-6	대	1,049.0	1,04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59	사북리	358-7	대	728.0	72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0	사북리	359-2	철도	835.0	8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1	사북리	359-3	철도	186.0	1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2	사북리	360-2	대	5,078.0	5,07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3	사북리	360-3	철도	925.0	92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4	사북리	360-4	대	3,084.0	3,0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5	사북리	360-5	대	1,050.0	1,05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6	사북리	360-6	철도	420.0	42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7	사북리	360-7	철도	133.0	13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268	사북리	361-2	잡	942.0	94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69	사북리	361-3	철도	584.0	5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0	사북리	361-4	철도	69.0	6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1	사북리	361-5	철도	192.0	19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2	사북리	361-6	철도	119.0	11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3	사북리	361-7	잡	622.0	62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4	사북리	361-8	철도	1,167.0	1,1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5	사북리	361-9	철도	120.0	12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6	사북리	375-5	잡	3,318.0	3,3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7	사북리	379-4	철도	2,552.0	2,55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8	사북리	379-54	철도	112.0	11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79	사북리	379-55	철도	162.0	16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0	사북리	379-56	철도	284.0	2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1	사북리	379-57	철도	145.0	14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2	사북리	379-58	철도	175.0	17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3	사북리	379-72	대	1,030.0	1,0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4	사북리	379-73	철도	2,355.0	2,3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5	사북리	380	대	238.0	23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6	사북리	380-3	도로	1,254.0	810.0	국(기획재정부)	-		
287	사북리	381-4	대	1,098.0	1,09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8	사북리	381-5	철도	3,143.0	3,1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89	사북리	381-6	철도	57.0	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0	사북리	381-13	철도	606.0	6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291	사북리	381-14	철도	502.0	5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2	사북리	381-15	철도	26.0	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3	사북리	381-17	철도	96.0	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4	사북리	381-18	철도	40.0	4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5	사북리	381-19	철도	106.0	1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6	사북리	381-20	철도	139.0	13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7	사북리	381-21	철도	119.0	11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8	사북리	381-22	철도	26.0	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299	사북리	381-40	전	2,650.0	2,65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0	사북리	381-45	대	183.0	18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1	사북리	381-46	대	1,442.0	1,44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2	사북리	383	도로	10,124.0	1,139.0	정선군	-		
303	사북리	384	전	496.0	4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4	사북리	384-1	잡	358.0	35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5	사북리	384-2	전	46.0	4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6	사북리	384-3	전	58.0	5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7	사북리	384-4	전	11.0	1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08	사북리	384-14	도로	2,175.0	2,175.0	국(국토교통부)	-		
309	사북리	384-19	도로	907.0	907.0	국(국토교통부)	-		
310	사북리	385	대	182.0	182.0	이진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0-401		
311	사북리	386-1	철도	486.0	4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2	사북리	386-2	답	879.0	879.0	이진욱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 77, 104-2205		
						이진우	강원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313	사북리	386-25	철도	165.0	16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4	사북리	386-26	철도	337.0	3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5	사북리	386-27	철도	40.0	4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6	사북리	386-28	철도	102.0	1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7	사북리	386-29	철도	139.0	13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8	사북리	386-30	철도	73.0	7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19	사북리	386-31	철도	46.0	4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0	사북리	386-32	철도	89.0	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1	사북리	386-33	철도	109.0	10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2	사북리	386-34	철도	221.0	22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3	사북리	386-35	철도	228.0	22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4	사북리	386-36	철도	20.0	2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5	사북리	386-37	철도	33.0	3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6	사북리	386-38	철도	50.0	5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7	사북리	386-39	철도	83.0	8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8	사북리	386-40	철도	172.0	17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29	사북리	386-41	철도	155.0	1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0	사북리	386-42	철도	116.0	11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1	사북리	386-43	철도	60.0	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2	사북리	386-44	철도	168.0	16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3	사북리	386-45	철도	212.0	21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4	사북리	386-46	철도	60.0	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5	사북리	386-47	철도	30.0	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336	사북리	386-48	철도	43.0	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7	사북리	386-49	철도	69.0	6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8	사북리	386-50	철도	102.0	1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39	사북리	386-51	철도	132.0	1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0	사북리	387	임	1,286.0	1,28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1	사북리	387-4	구거	2,357.0	2,3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2	사북리	387-5	잡	615.0	6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3	사북리	387-6	잡	647.0	64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4	사북리	387-7	잡	696.0	6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5	사북리	387-8	잡	670.0	67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6	사북리	387-9	구거	2,074.0	2,07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7	사북리	387-10	잡	680.0	68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8	사북리	387-11	잡	487.0	48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49	사북리	387-12	잡	402.0	4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0	사북리	387-13	잡	660.0	6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1	사북리	387-14	잡	634.0	63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2	사북리	387-15	구거	482.0	48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3	사북리	387-16	잡	679.0	67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4	사북리	387-17	잡	654.0	65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5	사북리	387-18	잡	688.0	6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6	사북리	387-19	잡	682.0	68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7	사북리	387-20	잡	676.0	67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58	사북리	387-21	잡	678.0	67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359	사북리	387-22	잡	699.0	69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0	사북리	387-23	잡	699.0	69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1	사북리	387-24	잡	696.0	6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2	사북리	387-25	잡	72.0	7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3	사북리	387-26	잡	689.0	6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4	사북리	387-27	잡	663.0	66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5	사북리	387-28	잡	437.0	4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6	사북리	387-29	잡	677.0	6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7	사북리	387-30	잡	697.0	69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8	사북리	387-31	잡	689.0	6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69	사북리	387-32	잡	694.0	69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0	사북리	387-33	잡	577.0	5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1	사북리	387-34	잡	682.0	68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2	사북리	387-35	잡	677.0	6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3	사북리	387-36	잡	688.0	6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4	사북리	387-37	잡	638.0	63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5	사북리	387-38	구거	684.0	6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6	사북리	387-39	구거	556.0	55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7	사북리	387-40	구거	493.0	49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8	사북리	387-41	구거	484.0	4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79	사북리	387-42	잡	608.0	60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0	사북리	388	전	330.0	3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1	사북리	388-1	전	106.0	106.0	변수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8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382	사북리	389-1	전	600.0	6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3	사북리	389-2	전	126.0	1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4	사북리	389-3	대	100.0	1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5	사북리	389-4	대	93.0	9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6	사북리	389-5	대	112.0	11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7	사북리	389-6	대	124.0	1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8	사북리	389-7	대	112.0	11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89	사북리	389-8	대	30.0	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0	사북리	389-9	대	132.0	1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1	사북리	389-10	대	142.0	14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2	사북리	389-11	대	130.0	1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3	사북리	389-12	대	176.0	17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4	사북리	389-13	대	172.0	17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5	사북리	389-14	대	217.0	21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6	사북리	389-15	대	92.0	9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7	사북리	389-16	대	132.0	1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8	사북리	389-17	대	219.0	21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399	사북리	389-18	대	116.0	11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0	사북리	389-19	대	87.0	8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1	사북리	389-20	대	100.0	1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2	사북리	389-21	대	100.0	1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3	사북리	389-22	전	415.0	4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4	사북리	389-23	대	104.0	10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05	사북리	389-24	대	93.0	9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6	사북리	389-25	대	90.0	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7	사북리	389-26	대	152.0	15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8	사북리	389-27	전	118.0	1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09	사북리	389-28	대	129.0	12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0	사북리	389-29	대	136.0	13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1	사북리	389-30	대	170.0	17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2	사북리	389-31	전	94.0	9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3	사북리	389-32	전	118.0	1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4	사북리	390-1	대	169.0	16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5	사북리	390-2	임	33.0	3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6	사북리	390-3	대	114.0	11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7	사북리	390-4	대	126.0	1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8	사북리	390-5	대	143.0	1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19	사북리	390-6	대	114.0	11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0	사북리	390-7	대	102.0	1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1	사북리	390-8	대	105.0	10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2	사북리	390-9	대	83.0	8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3	사북리	390-10	대	12.0	1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4	사북리	391-1	대	276.0	27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5	사북리	391-2	전	7.0	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6	사북리	391-3	대	93.0	9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7	사북리	391-4	대	21.0	2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28	사북리	392	잡	2,124.0	2,1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29	사북리	392-1	잡	1,069.0	1,06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0	사북리	392-2	잡	3,048.0	3,0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1	사북리	392-3	잡	11,174.0	11,17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2	사북리	392-4	잡	267.0	2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3	사북리	393	잡	372.0	37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4	사북리	393-1	잡	1,506.0	1,5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5	사북리	394-1	잡	28.0	28.0	주식회사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436	사북리	394-2	잡	4,428.0	4,42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7	사북리	394-3	잡	271.0	27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8	사북리	394-4	잡	559.0	55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39	사북리	394-7	임	1,139.0	1,13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0	사북리	394-8	도로	7,868.0	374.0	정선군	-		
441	사북리	394-15	임	100.0	1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2	사북리	394-17	잡	1,506.0	1,50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3	사북리	394-24	잡	2,895.0	2,89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4	사북리	395	대	64.0	6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5	사북리	395-1	대	57.0	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6	사북리	395-2	대	53.0	5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7	사북리	395-3	대	24.0	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8	사북리	396	대	146.0	146.0	권동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97번길 22, 105-1605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49	사북리	396-1	도로	2,738.0	441.0	정선군	-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50	사북리	397	전	1,588.0	1,5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1	사북리	397-1	전	1,653.0	1,65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2	사북리	397-2	전	119.0	11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3	사북리	397-3	전	137.0	1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4	사북리	397-4	전	113.0	11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5	사북리	397-5	전	123.0	12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6	사북리	397-6	전	107.0	10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7	사북리	397-7	대	107.0	107.0	정연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66, 125-1405		
458	사북리	397-8	전	198.0	19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59	사북리	397-9	대	117.0	117.0	정태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9		
460	사북리	397-10	대	105.0	10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1	사북리	397-11	대	55.0	55.0	최성석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하이원길 34-1		
462	사북리	397-12	전	53.0	5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3	사북리	397-21	전	303.0	30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4	사북리	397-22	도로	643.0	64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5	사북리	397-23	대	356.0	35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6	사북리	397-24	전	480.0	48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7	사북리	397-25	전	409.0	40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8	사북리	397-26	전	159.0	15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69	사북리	397-27	전	240.0	24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0	사북리	397-31	전	25.0	25.0	권경화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함리 158-1	압류 지분 2/15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471	사북리	397-33	전	24.0	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2	사북리	398	전	1,650.0	1,65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73	사북리	398-1	대	2,160.0	2,1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4	사북리	399	대	648.0	6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5	사북리	400	전	5,927.0	5,92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6	사북리	401	전	1,907.0	1,90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7	사북리	403	대	354.0	35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8	사북리	403-1	임	6,634.0	6,63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79	사북리	403-3	임	388.0	3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0	사북리	404	잡	724.0	72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1	사북리	405	잡	4,932.0	4,93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2	사북리	406	잡	1,266.0	1,26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3	사북리	407	대	245.0	24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4	사북리	408	잡	3,260.0	3,2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5	사북리	409	임	199.0	19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6	사북리	409-1	임	510.0	51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7	사북리	409-2	임	45.0	4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8	사북리	410	대	4,618.0	4,6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89	사북리	411	대	189.0	1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0	사북리	411-2	임	55.0	5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1	사북리	411-4	대	235.0	23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2	사북리	412	임	3,365.0	3,36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3	사북리	412-1	도로	30,187.0	2,468.0	정선군	-		
494	사북리	412-2	임	638.0	51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5	사북리	412-6	임	7,910.0	7,91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496	사북리	412-9	임	151.0	151.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7	사북리	421	임	487.0	48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8	사북리	421-1	임	557.0	55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99	사북리	421-2	도로	70,330.0	375.0	정선군	-		
500	사북리	422	임	513.0	51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1	사북리	422-2	임	8,045.0	8,00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2	사북리	424	대	60,766.0	60,76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3	사북리	424-1	학교	5,365.0	5,36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4	사북리	424-2	대	160.0	16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5	사북리	424-3	대	558.0	55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6	사북리	424-4	대	548.0	5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7	사북리	424-5	대	573.0	57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8	사북리	424-6	학교	10,690.0	10,69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09	사북리	산147-3	임	46,309.0	46,30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0	사북리	산147-4	임	1,154.0	1,15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1	사북리	산147-6	임	1,320.0	1,32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2	사북리	산147-7	임	104.0	10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3	사북리	산147-8	임	3,179.0	3,17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4	사북리	산151-2	임	198.0	19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5	사북리	산152	임	1,884.0	1,884.0	국(산림청)	-		
516	사북리	산153-4	임	4,959.0	4,95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7	사북리	산153-6	임	496.0	49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18	사북리	산153-20	임	11,330.0	11,33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519	사북리	산153-21	임	31,736.0	31,73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0	사북리	산154-1	임	1,518.0	1,51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1	사북리	산154-2	임	1,249.0	1,24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2	사북리	산154-3	임	6,978.0	6,97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3	사북리	산154-4	임	1,225.0	1,22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4	사북리	산155-3	임	2,538,216.0	94,184.0	국(산림청)	-		
525	사북리	산155-5	임	626.0	6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6	사북리	산155-6	임	488.0	48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7	사북리	산155-7	임	77.0	7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8	사북리	산155-10	임	348.0	34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29	사북리	산155-11	임	184.0	18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0	사북리	산155-12	임	333.0	333.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1	사북리	산155-38	임	138,638.0	138,638.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2	사북리	산155-39	임	5,379.0	5,37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3	사북리	산155-40	임	7,126.0	7,12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4	사북리	산155-41	임	446,595.0	44,037.0	국(산림청)	-		
535	사북리	산155-56	임	6,385.0	6,38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6	사북리	산155-57	임	17,589.0	17,589.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7	사북리	산155-58	임	140,037.0	140,0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8	사북리	산155-61	임	21,325.0	21,32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39	사북리	산155-83	임	515.0	16.0	정선군	-		
540	사북리	산155-94	임	33,646.0	33,646.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1	사북리	산155-108	임	51,767.0	51,76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542	사북리	산155-11 0	임	1,500.0	1,500.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3	사북리	산157-1	임	11,934.0	11,934.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4	사북리	산157-2	임	2,565.0	2,565.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5	사북리	산157-4	임	892.0	892.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6	사북리	산157-7	임	137.0	137.0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547	사북리	산160-3	임	11,513,361.0	28,390.0	국(산림청)	-		

## [별첨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선군 총괄)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00		
도시지역계		42,543,171	감) 17,036	42,526,135	3.49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소 계	5,023,056	-	5,023,056	0.41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7,131	-	1,137,131	0.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	-	3,517,798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	-	80,711	0.01	
		준주거지역	287,416	-	287,416	0.02	
	상업 지역	소 계	1,120,435	-	1,120,435	0.09	
		일반상업지역	1,103,580	-	1,103,580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공업 지역	소 계	611,392	-	611,392	0.05	
		일반공업지역	306,285	-	306,285	0.03	
		준공업지역	305,107	-	305,107	0.03	
	녹지 지역	소 계	35,788,288	감) 20,662	35,767,626	2.93	
		보전녹지지역	3,800,625	-	3,800,625	0.31	
		생산녹지지역	903,537	-	903,537	0.07	
		자연녹지지역	31,084,126	감) 20,662	31,063,464	2.55	
	도시지역(미지정)		-	증) 3,626	3,626	0.00	
	관리지역	소 계	225,137,337	감) 358,386	224,778,951	18.43	
		보전관리지역	94,929,560	-	94,929,560	7.78	
		생산관리지역	27,734,380	-	27,734,380	2.27	
계획관리지역		102,473,397	감) 653,555	101,819,842	8.35		
관리지역(미세분)		-	증) 295,169	295,169	0.02		
농림지역		943,958,506	증) 375,422	944,333,928	77.42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6		

※ 기정 :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0-332호, 2020.8.1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A-1-1	고한읍 고한리 산355번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세분)	5,520	8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 일부 지정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A-2-1	사북읍 사북리 산155-55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세분)	8,145	80	"
B-1-1	고한읍 고한리 124-90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미지정)	3,310	80	"
B-1-2	고한읍 고한리 산1-229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세분)	256,588	80	"
B-1-3	고한읍 고한리 산1-265 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371,255	80	"
B-2-1	고한읍 고한리 산1-244 번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미지정)	316	80	"
B-2-2	고한읍 고한리 산1-229 번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세분)	5,197	80	"
B-2-3	고한읍 고한리 산1-244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22,469	80	"
B-3-1	고한읍 고한리 129-2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세분)	19,719	80	"
①	사북읍 사북리 산155-41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302	100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탄광문화공원)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②	사북읍 사북리 408번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20,662	10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㉓	탄광문화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403번지 일원	-	증)195,472	195,472	금회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㉓	탄광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195,472㎡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탄광문화공원)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38	중로1-C1 사북리 403-1번지	중로2-10 사북리 산153-24번지	일반 도로	탄광문화 공원	금회	

## 나)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1	- 도로 신설 : B=15m, L=538m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탄광문화공원)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신설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 구		비고
		위 치	면 적(㎡)	
계			195,472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사북읍 사북리 378-26번지 일원	99,936	
②	공공시설용지	사북읍 사북리 379-4번지 일원	34,530	
③	녹지	사북읍 사북리 산153-20번지 일원	61,006	

##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sup>2</sup> )	
계			195,472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99,936	
①-1	탄광문화공원	사북읍 사북리 387-26번지 일원	66,755	
①-2	골말체험공원	사북읍 사북리 389-12번지 일원	33,181	
② 공공시설용지			34,530	
②-1	고도정수처리시설	사북읍 사북리 375-5번지 일원	6,273	
②-2	외곽관리동	사북읍 사북리 산153-21번지 일원	10,219	
②-3	뿌리공원	사북읍 사북리 379-4번지 일원	6,615	
②-4	하이원안전센터	사북읍 사북리 381-4번지 일원	3,054	
②-5	도 로	사북읍 사북리 387-19번지 일원	8,369	
③ 녹 지			61,006	
③-1	조성녹지1	사북읍 사북리 산153-21번지 일원	7,597	
③-2	조성녹지2	사북읍 사북리 379-56번지 일원	6,663	
③-3	조성녹지3	사북읍 사북리 381-5번지 일원	662	
③-4	보존녹지1	사북읍 사북리 산153-20번지 일원	16,870	
③-5	보존녹지2	사북읍 사북리 산155-41번지 일원	25,369	
③-6	보존녹지3	사북읍 사북리 산155-41번지 일원	3,84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1 (탄광 문화공원)	사북읍 사북리 387-2 6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참고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①-2 (골말 체험공원)	사북읍 사북리 389-12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②-1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북읍 사북리 375-5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②-2 (외곽 관리동)	사북읍 사북리 산153- 2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②-3 (뿌리공원)	사북읍 사북리 379-4번 지 일월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②-4 (하이원 안전센터)	사북읍 사북리 381-4번 지 일월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고		
		형 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색 채	정선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지구 외)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C1	20	보조간 선도로	5,020	고한읍 고한리 산124-123임	사북읍 사북리 381-38철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7.09.)	
변경	중로	1	C1	20	보조간 선도로	5,084	고한읍 고한리 산124-123임	사북읍 사북리 381-26도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7.09.)	

나.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C1	중로 1-C1	-선형 및 연장 변경 : B=20m, L=5,020m→5,084m, 증)64m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탄광문화공원)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도로개설 현황을 고려하여 선형 및 연장 변경

5.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계재생략)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091호

##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 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22.4.26.)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참고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군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정선군 주민투표조례」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규정 정비
  - 주민투표법 개정(20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에 대해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 다.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정보시스템(\*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다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 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2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관한”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2.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3. <u>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li> <li>4. <u>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u></li> <li>5. <u>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u></li> </ol>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u></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 제2항에 따라</u> ----- ----- ----- -----.</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u>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u></p>	<p><u>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 -----.</u></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u>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u>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u>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u>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u></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u>-----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u>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u> ----- -----.</u></p> <p>② <u>----- 생년월일을 ----- ----- ----- -----.</u></p>

현 행	개 정 안
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제1항에 따라 ----- -----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 -----.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 ---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 ----- -----.
1. ~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
제13조(처리기간) ① (생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p>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u>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 ----- ----- <u>법 제12조제7항에 따른</u> ----- ----- -----.</p>
<p>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u>한하여</u>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 ----- ----- ----- <u>한정하여</u> ----- -----.</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u>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u>법 제22조제2항에 따라</u> ----- ----- -----.</p>
<p>②<u>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p>	<p>②<u>법 제22조제2항에 따라</u> ----- ----- ----- ----- -----</p>

현 행	개 정 안
<p>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p>	<p>-. ----- ----- ----- -----.</p>
<p>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u>법 제10조제1항에 따른</u> ----- ----- 따른다.</p>
<p>②<u>법 제10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②<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u>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③<u>제6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③<u>제5조제2항에 따른</u> ----- ----- ----- 따른다.</p>
<p>④<u>제8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④<u>제7조제2항에 따른</u> ----- ----- 따 른다.</p>
<p>⑤<u>법 제12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⑤<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u>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⑥<u>법 제12조제4항의 규정</u>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p>	<p>⑥<u>법 제12조제4항에 따른</u>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p>

현 행	개 정 안
<p><u>식에 의한다.</u></p> <p>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u>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p><u>른다.</u></p> <p>제16조(공표방법 등) ----- ----- -----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u> ----- ----- <u>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u> ----- ----- --.</p>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b>정 선 군 수</b>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

조례 제 호

000(지자체명)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5일 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 ※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 및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등은 현행법상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 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청구인대표자</span> <span>년    월    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span>(서명 또는 날인)</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귀하</div>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li>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li> <li>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관 계 법 령

##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시행일: 2022. 10. 27.] 제7조제1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 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0. 27.] 제12조의2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092호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9. 22. ~ 10.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24),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다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선군 공고 제2022-11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22.6.1.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시대상 : 316호

나. 열람방법 : 군청 세무과(☎033-560-214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28일

나.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라. 제출장소 : 정선군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  
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3. 기타사항 :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149)로 연락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	--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	-------------------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m <sup>2</sup>	Appellant's Opinion KRW/m <sup>2</sup>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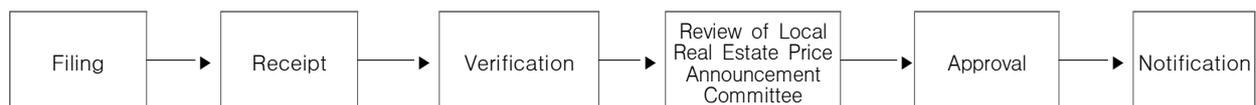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 Proceedings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sup>2</sup>)

정선군 공고 제2022-1113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청년활동 거점 공간 구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되어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관련 별표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17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189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청년활동 거점공간	위 치	비고
1	고한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2	사북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6, 사북2리 마을회관 2층	
3	남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남면 도원2길 33, 제1동 2층	
4	임계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0길 24-7	

관 계 법 령

□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7호, 8호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  
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6호(생략)

7.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

8. 청년활동의 장려

가.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9.~10호(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  
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  
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  
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2-1130호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05.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6.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07.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08.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2022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22-1136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정선군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게 체육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골프연습장”의 운영요금 및 위탁 기준 마련(별지 3 및 부칙)
- 나. 사용허가와 이용요금 및 감면기준 등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2조)
- 다.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점검기준 마련(안 제21조)
- 라. 공공체육시설의 적용범위 및 사용시간 명시화(별지 1, 2)

3.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0. 04. ~ 2022. 10.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7),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6.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7.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수·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군수 및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수영장 및 정선골프연습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 중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정선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

- 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정선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정선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 라. 유소년, 초·중·고·대학팀·실업팀 및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
-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다. 가, 나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라.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11.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③ 군수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전부
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6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정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6. 정선골프연습장 운영·관리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관리 등으로 본다.

[별표 1]

체육시설 적용범위

-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정선골프연습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딸려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6:00~09:00	06:00~09:00
주간	09:00~18:00	09:00~17:00
야간	18:00~22:00	17:00~22:00

[별표 3]

## 사용료 및 이용료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체육행사	97,000	126,000	
	일반행사	180,000	230,000	
	연습사용	90,000	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30,000	40,000	
	일반행사	60,000	80,000	
	연습사용 (단체)	6,000	6,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2,000	2,000	2시간 기본
육상트랙	체육행사	38,000	51,000	
	일반행사	92,000	127,000	
	연습사용 (단체)	6,500	7,3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400	1,600	2시간 기본
체육관	체육행사	74,000	89,000	
	일반행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 (단체)	81,000	91,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000	1,300	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	무 료			
테니스장숙소동	2인1실		4인1실	
	15,000		30,000	

※ 1일 기준

## ○ 정선종합경기장 내 정선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구분	이용자	이용료	비 고
수시 이용자	1회	어른	10,000	○수시 및 쿠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300개)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120분(400개)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 에서 조정할 수 있음.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정기 이용자	1개월	어른	100,000	
		청소년	50,000	
		어린이	30,000	
쿠폰 이용자	3개월	10매	100,000	
		20매	150,000	

※ 제4조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수강료(주3회)	30,000	30,000	30,000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체육관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74,000		89,000	
	일 반 행 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단체)	81,000		91,000	2시간기본
	연습사용(개인)	1,000		1,300	2시간기본
비 고	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단위	사용료	비 고
전 기	1 KW당	관허요금	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	1 일	20,000	입장객 500명이하
		40,000	입장객 501~1,000명이하
		60,000	입장객 1,001~5,000명이하
		80,000	입장객 5,001~10,000명이하
		100,000	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위	1인 1회	400	
마 이 크	1일 1대	5,000	
방송음향	1 일	40,000	

[별표 4]

##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25,000
		국제	50,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50,000
인터넷 중계	체육경기	국내	20,000
		국제	45,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4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15,000
		국제	25,000
	체육경기 외	국내	10,000
		국제	20,000
영화촬영		50,000	
경기촬영		30,000	
TV 녹화		TV 중계방송의 50%	
라디오 녹음		라디오 중계방송의 5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표 5]

##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수량/단위	사용료	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	반입부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시설물에 부착·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12m <sup>2</sup> 이내 개당	5,000	1일 기준
	12m <sup>2</sup> 초과 개당	10,000	
	현수막 m <sup>2</sup> 당	1,000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	개당 일간	5,000	
전광판광고물	1회 당	10,00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샷 위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상행위	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 개) 3.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 개) 4. 전광판 광고물 ( 회)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				
입장료	어 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 단 체 : 원	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명 ( 시간) 2. 음향 ( 일) 3. 샷 위 ( 명) 4. 수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타 (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변경신청 내용				
차액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취소사유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 시간) 2. 음 향 ( 일) 3. 샤 워 ( 명) 4. 수 도 (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일 시간)
감면사유			
입증서류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관계법령 발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정선군 공고 제2022-1137호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을 조성하고 체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마케팅의 용어 규정(안 제2조)
- 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3조, 제5조)
- 다.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직원) 구성(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0. 04. ~ 2022. 10.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7),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143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1. 위탁시설 현황

- 가. 시설명 :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나. 위치 :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70(예미농공단지내)  
 다. 시설현황  
 - 토지면적 : 6,349.1㎡,  
 - 건물면적 : 4,093.4㎡(철골구조, 칼라강판)

구분	건축면적현황			비고
	소계	물류창고	전처리시설	
계	4,093.4	3,765.17	328.23	
지1층	1,795.88	1,795.88		
1층	2,045.88	1,717.65	328.23	
2층	251.64	251.64		

- 물류장비 : 배송차량 2대, 지게차 2대, 저장고, 냉동고, 채소절임 자동화시스템 등

2. 위탁기간 : 2022. 12. ~ 2025. 11.(3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예산 : 비예산 (민간위탁금 없음)

4. 위탁사무

-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장비 포함)
-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
  - 지역 내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에 상품의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유도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 전국 대형 유통업체, 도·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 그 밖에 물류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5. 위탁조건

-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운영은 수탁자 자체 비용으로 운영 (각종 공과금 및 시설관리비 등 포함)
- 시설물 유지관리 시 시설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정선군, 단순 소모성 개보수는 수탁자가 관리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등은 수탁자가 확보하여 운영
- 이용료는 센터의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 납부
  -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적용
  - ※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서로 정한다.

#### 6. 공모 참가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자본금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 ①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인 이상 소매업자 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10인 이상 도매업자
  - ② 단체참여 도·소매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유통자회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1호의 지역농·축·산림조합
- 지역농협,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단체나 법인, 지역 전통시장조합, 물류도매상 등이 공동으로 참여·출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조건과 협약체결 이전 시 까지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정선군에 두어야 한다.)
- 공산품 및 농산물 유통에 적합한 법인(도·소매업에 한정)

#### 7. 추진일정

- 제안서 공고 및 접수
  - 위탁공고 : 2022. 10. 04.(화) ~ 10. 18.(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0. 24.(월), 09:00~18:00 (57일간)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정선군청 경제과 (정선읍 봉양3길 21)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22. 11월 둘째주 이내
- 장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사업운영에 대한 의지·비전 제시 등
  -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의거 심사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참여자 : 발표자 포함 제안 업체별 2명 이내 ( 단체대표 또는 사업 총괄 책임자나 실무 책임자 등 대표가 지정한 사람)
  - ※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통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발표

제안서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100점 =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

구 분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경영상태, 인력현황, 운영경험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경제성
배 점	100	30	55	15

※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지며 총점은100점으로 한다.
- 정성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이면 각하나만 제외한다.
-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제안설명,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사한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총60점 이상인 제안자(단독 제안 포함) 중 최고점수를 얻은 공모 참여단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시행하여 운영자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단체로 결정한다.
- 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라 정선군과 협상 진행 후 운영협약을 체결한다.
-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타결 시 후 순위 협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 최고점수를 얻은 단체가 수탁을 포기하면 차 득점 공모 참여단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 향후 별도 심사 계획 수립 때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선정 결과 발표 : 군 홈페이지 게시

- ※ 소정 날짜 안에 협약체결 불응 때 정선군에서 민간 위탁 여부 및 방법 재결정

9. 제안서 작성 때 유의 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평가용)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 사본(평가용)은 단체명 및 대표자, 로고 등 표시하지 않고 작성
- 제안서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하단 중앙에 “-1-” 와 같이 표시한다),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 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모 참여단체는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공모 참여단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적격자심사 위원회 참석은 공모 참여단체의 단체대표 또는 사업총괄 책임자나 실무책임자로 한하며 참여단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정선군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공모 참여단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공모참여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공모 참여단체

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정선군 경제과 (☎ 033-560-2428)로 문의 바람

11. 자료제공 및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공모 참여 신청서 및 작성 양식은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후 사용
- 제출서류 : 붙임 구비서류 목록 참조
- 제안관련 서류
  - 제안 관련 공문 1부.
  - 서류제출 목록
    - 제출도서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제출도서는 스프링, 클립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본드 제본할 것

① 제출도서 1. 제안응모 참가신청서류 <서식 1 ~ 13>

- 작성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 A4용지, 세로(종) 좌철제본, 단면인쇄
-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 내지 백상지

② 제출도서 2. 정성평가서 <서식 14 ~ 15>

- 작성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규 격 : A4용지, 가로(횡) 상철제본, 단면인쇄
-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 내지 백상지
- 작성서식 : 평가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③ 제안평가위원회 설명용 PPT, PDF 파일저장 USB 1매

※ 제출도서 2.(정성평가서)를 PPT, PDF 파일로 저장

붙임 : 사업 제안요청서 1부. 끝.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 정선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사항 (안 제7조~제8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표창 (안 제10조)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선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 2. 사업 타당성

-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부서간 협의 여부

## 4. 재정협의

-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 5.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 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다음 해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2호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 정선군 관내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되면서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생활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5조)
-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3호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회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현 직제에 맞게 수정 (안 제4조)
-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 (안 제7조)
- 교육강사 위촉해제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
-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적용 시기 (부칙 제2조)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를 “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과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육강사 등의 위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부 인사를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p> <p>제4조(관리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u>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u></p> <p>제7조(사용료 면제)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u></li> <li>2. <u>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u></li> <li>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u>모.부자복지법</u>」 또는 「<u>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에 의한 보호대상자</li> <li>4. <u>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u></li> </ol>	<p>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p> <p>제4조(관리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u>여성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u></p>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u></li> <li>2. <u>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u></li> <li>3. <u>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u></li> </ol>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li> <li>2.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li> <li>3. 「<u>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4.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li> <li>5.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6. <u>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u></li> </ol>

제14조(강사초빙)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교육강사 등의 위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시행시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부인사를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관 계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4호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의 선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의회회의장 포상 종류 추가 (안 제4조)
  - 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 신설 (안 제9조)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10조의2)
  - 업무담당자 → 의정팀장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 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3항 중 “업무담당자” 를 “의정팀장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u>상장</u> 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 <u>상장, 모범공무원 포상</u> -----.
제9조 (생략) <신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u>업무담당자</u> 로 한다. ④ (생략)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의정팀장</u> -----.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생 략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5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안 제2조)
- 모범공무원 포상방법 (안 제3조)
- 모범공무원 포상절차 및 시기, 인원 (안 제4조 ~ 안 제5조)
-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예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의회규칙 제 호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6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제3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제9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제12조)
-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제18조)
-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제26조)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7조~제37조)
-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안 제38조~제39조)
- 기존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함 (부칙 안 제2조)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 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5. 우리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4. 법령에 따라 정선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의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단체 및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2.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검직 사임권고 거부
-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4.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5. 군과의 계약체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 7. 그 밖의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제3장 행동강령

##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군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군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맡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액(價額)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였을 때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내용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품등을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구성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9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겸직 허위신고</li> <li>- 미신고, 허위신고</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제4항 위반)</li> </ul>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거래금지 위반</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li> <li>- 미신고, 허위신고</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회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제4항 관련)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5항, 제26조제3항 관련)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서식] (제22조 관련)

###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11호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 [별지 제13호서식] (제26조제5항제3호 관련)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7호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 천재지변 발생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의원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 회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회의 원격 출석 및 표결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표결 및 발언 가능
- 의안의 제출기한 변경 (안 제19조제2항)
  - 집회일 5일전 → 7일전
- 의원 5분 자유발언 횟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34조)
  - 발언 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 초과 할 수 없다 → 무제한
- 군정에 대한 질문 규정안 개정 (안 제69조)
  - 군정질문서 송달 기간 변경(의장→군수) : 2일전 → 5일전
  - 군정질문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군수→의원) : 답변전 → 질문 2일전
- 상위 법령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 정비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의회규칙 제 호

##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 을 “정선군의회 의원” 으로,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 을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장” 을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후” 를 “총선거 후”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 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의” 를 “5일 이내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의장” 을 “정선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때” 를 “때도” 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2조 제1항” 을 “제72조제1항” 으로 한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 를 “휴회 중이라도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요구” 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5일전” 을 “7일전” 으로 한다.

제19조의1을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구 조문대비표” 를 “신·구조문대비표” 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번안동의” 를 “번안 동의”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질의 토론” 을 각각 “질의·토론”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하며” 를 “하며,” 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한다)를” 을 “한다)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를 “한다” 로 한다.

제36조 중 “소수의견자” 를 “소수 의견자” 로, “때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41조 후단 중 “때 까지” 를 “때까지” 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거절하여서” 를 “거절해서” 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회수” 를 “횡수” 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들을수” 를 “들을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회의중지” 를 “회의 중지”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위원회” 를 “기타 위원회” 로 한다.

제63조 본문 중 “제출되는” 을 “제출된” 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분별” 을 “부문별” 로 한다.

제5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 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 으로 “결산” 은 “기금의 결산” 으로 본다.

제69조제1항 중 “회의중” 을 “회기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일전” 을 “5일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답변전까지 의장과 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2일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서면으로 배부되도록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의원과의” 를 “의원과” 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군수등의 발언)” 을 “(군수 등의 발언)” 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원” 을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 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91조에 따라” 로 한다.

제78조제5호 중 “행사등” 을 “행사 등” 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결)” 을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를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 를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청인수” 를 “방청인

수” 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6조” 를 “법 제9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3일이내” 를 “3일 이내”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u>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임기초에</u> 당선증서를 <u>의회 사무과장</u>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정선군의회 의원</u>----- ----- <u>임기 개시 전에</u> 당선증서를 <u>정선군의회 사무과장</u> (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 ----- ----- .</p>
<p>제3조(의석배정)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u>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u>총선거후</u>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조(의석배정) ----- <u>정선군의회 의장</u>(이하 "의장" 이라 한다)----- ----- . --- <u>총선거 후</u> ----- ----- ----- .</p>
<p>제4조(개회식) <u>의회는</u>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p>	<p>제4조(개회식) <u>정선군의회</u>(이하 "의회" 라 한다)----- ----- . ----- ----- ----- ----- -----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략)  ② <u>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u>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u>5일 이내인</u> ----- -----</p>

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정선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의) ----- 때도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

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1(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

72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요구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7일전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신·구

조문 대비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번안 동의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8조(발언의 허가) ①·② (생략)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  
 -----  
 -----  
 -----  
 -----  
 -----.

제25조(안건심의) ① -----  
 -----  
 ----- 질의·토론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발언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  
 -----  
 -----  
 -----  
 -----  
 -----  
 -----  
 -----  
 -----.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 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① (생 략)
-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때에는 -----  
-----.

제41조(표결의 참가) -----  
-----  
-----.  
-----  
--- 때까지 -----  
-.

제41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제1항에 따라 -----  
-----  
-----  
-----  
거절해서-----.

③ ~ ⑤ (생략)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 10.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  
----- 회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공청회) ① -----  
-----  
-----  
-----  
----- 들을 수 --.

② ----- 때에는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  
-----  
-----.

1. --- 회의 중지-----  
--
2.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63조(예산안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11. 기타 위원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예산안의 심의) -----  
---- 제출된 -----  
-----  
-----  
-----  
-----  
-----  
-----  
-----  
-----  
-----  
-----  
-----  
-----.

제65조(예산안의 의결) ① -----  
-----  
부문별-----.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

제69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 회의는 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일전까지 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전까지 의장과 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기타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0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

다.

제69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

---- 회기 중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일전-----

-----.

④ -----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2일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서면으로 배부되도록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

----- 의원과의 협의를 -----

-----.

제70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1조(군수등의 발언) (생략)

제73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4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12.22.>

② (생략)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일 이내-----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군수 등의 발언) (현행과 같음)

제73조(사직) ①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  
-----  
-----  
-----.

- 1. ~ 4. (생 략)
- 5.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  
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결) ①·② (생 략)

제83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 1. (생 략)
-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삭 제

4. (생 략)

② (생 략)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  
다.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  
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생 략)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 9.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행사 등 -----  
-----

제8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83조(방청의 제한) ① -----  
--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방청인 수-----  
-----  
-----.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9. (현행과 같음)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  
 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  
 6.12.22.>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  
 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  
 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생략)

②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  
 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  
 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계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p>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기의 집회일로부터 <u>3일이내</u>에  하여야 한다.</p>	<p>-----  ----- <u>3일 이내</u>-----  -----.</p>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 12 (생략)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8호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 군수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정선군의회”로, “출석, 답변”을 “출석·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관·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실, 과장”을 “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수·부군수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범위) ① 정선군의회 --- 출석·답변----- -----.</p>
<p>1. 부군수</p>	<p>1. 군수·부군수</p>
<p>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p>	<p>2. ----- 국장, 관·과장급</p>
<p>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p>	<p>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p>
<p>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p>	<p>4. ----- 관·과장----- -----</p>
<p>&lt;신 설&gt;</p>	<p>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p>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p>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29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2019.12.27.시행)를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폐지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0호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회장

1. 개정이유

- 정선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및 별지 서식 변경과 조례정비 기준에 의거 어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
  -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의원 신분증 직인 날인 규정 신설 (안 제3조)
- 그 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정비(안 제1조 ~ 제6조)
- 의원 신분증 기재사항 변경 (별표서식)
- 신분증 발급대장 및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3. 예고기간 : 2022. 9. 23. ~ 9. 30.(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규칙 제 호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을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의원” 을 “정선군의회 의원” 으로,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 을 “신분증” 으로, “발급등” 을 “발급 등” 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의회의원” 을 “정선군의회 의원”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을 “(신분증 규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분증” 을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 으로, “첨부하되” 를 “수록하되” 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중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을 “정선군의회의회장”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를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를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으로,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 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분증의 반납등)” 을 “(신분증의 반납 등)” 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및 서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의회</u> <u>의원의 신분</u>을 표시하는 <u>신분증</u> (<u>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u>)의 <u>규격, 제식 및 발급</u>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지방</u> <u>의회의원</u>에게 적용한다.</p> <p>제3조(<u>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u>상) ① <u>신분증</u>에는 <u>의원증 번호, 인적사항</u>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u>첨부</u>하되, 그 <u>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u>은 <u>별표</u>와 같다.</p> <p><u>&lt;신 설&gt;</u></p> <p>제4조(<u>신분증의 발급권자</u>) 신분증은 <u>당해 지방의회 의장</u>(이하 “<u>의장</u>”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p> <p>제5조(<u>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u>)</p>	<p><u>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u></p> <p>제1조(목적) ----- <u>정선군의회 의원</u>----- <u>신분증</u>----- ----- -- <u>발급 등</u>----- -----.</p> <p>제2조(적용범위) ----- <u>정선군의회 의원</u>-----.</p> <p>제3조(<u>신분증 규격 등</u>) ① <u>정선군의회 의원</u>의 <u>신분</u>을 표시하는 <u>신분증</u>(이하 “<u>신분증</u>”이라 한다)----- <u>수록</u>하되-----.</p> <p>② <u>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u>의 <u>날인</u>은 <u>그 직인</u>의 <u>인영</u>의 <u>인쇄</u>로써 이에 <u>갈음</u>할 수 있다.</p> <p>제4조(<u>신분증의 발급권자</u>) ----- -- <u>정선군의회의장</u>----- -----.</p> <p>제5조(<u>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u>)</p>

① (생 략)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②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

③ -----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  
-----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2. 글자 속성

구 분		글자크기	색 상	서체종류
앞 면	이름(한글, 영문)	13Point, 9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정선군의회	13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뒷 면	제 호	8Point	C: M: Y: K: (백색)	고딕
	의원증	16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10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년 월 일	8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정선군의회회장	15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 3. 의원신분증 도안등의 색상

- 가. 색상 : 흰색바탕에 청색  
나. 글씨 : 흰색, 남색, 검정

## 4. 신분증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 5. 의회마크 규격

- 가. 전면 : 11mmX11mm  
나. 후면 : 28mmX28mm

## 6.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

## 7.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				신규발급번호	발급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횟수	회수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의장									사유	회수시			

[별지 제2호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성명(한글)
	생년월일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 ] 기타 ( )
분실사유	* 분실 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항	*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회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2호

공인 신조 공고

「정선군의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조 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정 선 군 의 회 의 장

- 1. 신조 사유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 2. 최초 사용일 : 2022. 10. 4.
- 3. 등록 공인

연번	공인명	신조 사유	재료 및 규격	인영	비고
1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방자치법」 제65 조에 따른 윤리특별 위원회 운영	화양목 2.4cm 정방형 (훈민정음체)		신규등록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33호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중요사항의 보고 및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규정 (안 제5조 ~ 제6조)
- 전결사항의 효력 (안 제 7조)

3. 예고기간 : 2022. 10. 5. ~ 10. 10. (초일불산입 / 5일간)

4. 제정 지침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훈령 제 호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 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주요 의정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 바. 의회 예산(안) 편성
- 사.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아.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 자.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
- 차.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카.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 사. 직원 복무(출장·연가 등) 관리·감독
- 아.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정선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의회사무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담당	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인사운영계획	기안			○
	나. 임면, 승진, 퇴직, 휴직, 전출, 파견, 겸임	기안			○
	다. 징계, 상훈				○
	라.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
	마. 부서 배치 및 사무분장	5급 이상 6급 이하	기안 기안		○
복무에 관한 사항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훈련계획	기안		○	
	나. 교육생 선발	기안		○	
	다. 교육 및 연수 출장	기안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기안			○
	나. 각종행사계획 수립	기안		○	보고
	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협의	기안		○	
의사에 관한 사항	가. 의회소집요구서 접수	기안			○
	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기안			○
	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
	라. 의사일정 작성	기안			○
	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안			○
	바. 군정질문서 송부	기안			○
	사. 5분 자유발언 허가	기안			○
의안에 관한 사항	가. 의안 접수 및 회부	기안			○
	나. 철회된 의안의 통지	기안			○
	다. 의안의 인쇄, 배부, 이송	기안		○	
	라.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기안		○	
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기안		○	
	나. 회의록 원고 복사와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기안		○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기안			○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기안			○
	가. 경호요청	기안			○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기안			○
	다. 참관의 허가	기안			○
	라. 방청권의 발행, 교부	기안		○	

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기안		○
	나. 청가 허가	기안		○
	다.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기안		○
	라. 국내·외 출장 및 연수	기안		○
	마. 의원 등록	기안	○	
	바. 병역사항신고 접수와 통지	기안	○	
의전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	기안	○	
	디. 의장 포상	기안	○	보고
청원에 관한 사항	가.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		○	
	나. 불수리의 통지		○	
	다. 심사시간 연장			○
	라. 청원서의 이송			○
	마. 처리결과의 통지		○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인 신조	기안	○	
	나. 공인 폐기	기안	○	
	다. 공인 관리	기안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의회예산(안)편성	기안		○
	나. 의회예산(안)제출	기안	○	
	다. 예산집행 품의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기안	○	
	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공개	기안	○	
	마. 정기적인 회계집행(수당,보수 등)	기안	○	
	바. 회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신청	기안	○	
	사. 재물조사업무	기안	○	
	아. 물품 수급과 관리	기안	○	
	자. 의회 청사 관리	기안	○	
	차. 기념품과 비품관리	기안	○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	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인터뷰 및 보도자료		○	
	다. 일반 의정홍보와 광고	기안	○	
	라.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기안	○	
	마. 의정백서 발간	기안	○	
	바. 음향시설과 방송장비 관리	기안	○	
	사. 간행물 구입과 배부	기안	○	
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장 포상대상자 결정	기안		○
	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	기안	○	보고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보고

서무기타	가. CCTV 영상 정보 취급 및 관리	기안		○	
	나. 각종일지 및 대장 관리	기안		○	
	다. 정기등청일 안건에 관한사항	기안		○	
	라. 의장단협의회 사무처리	기안			○
	마. 축사, 발간사, 격려사 등 작성	기안		○	
	바. 기록물관리	기안		○	
	사. 보안업무와 비밀취급인가 신청	기안		○	
	아. 일반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기안		○	
	자. 차량관리와 운행 관리	기안		○	
	카. 문서 관리 및 접수문서의 선결	기안		○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가. 의회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계획	기안			○
	나. 의회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초안작성에 따른 사전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기안		○	

## 【전문위원실】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위원장
		전문 위원	전문 위원 (사무관)	
1. 위원회 활동 보좌	가. 위원회 의사진행		○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	
	다. 의사진행 보좌		○	
2. 의안의 처리	가. 의안의 검토, 조사 및 자료 작성		○	
	나.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다. 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			○
3. 청원의 처리	가. 검토보고서 작성		○	
	나. 청원 심사결과 보고서안 작성		○	
	다.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 관 계 법 령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 제 정 ) 2014.10.16 의회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소관 사무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의 결재사무를 그 내용에 따라 위임받은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회소관 사무전결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결방법) ① 의회소관 사무의 결재 및 전결은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전결사항은 그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도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을 처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에게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중 처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의 바로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전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의장과 사무과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문서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부 칙

이 규정은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사 무 과]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의장
		담당	과장	
1.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
	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			○
	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	
	라. 의원 간담회 운영			○
2. 의사에 관한 사항	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
	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
	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
	라. 의사일정 작성			○
	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바. 질문서 송부			○
	사. 회의소집 알림			○
	아. 5분 자유발언 허가			○
3. 의안에 관한 사항	가. 의안접수			○
	나. 특별위원회 의안회부			○
	다. 철회된 의안통지		○	
	라. 의안처리결과통지		○	
	마. 의안의 배부		○	
	바.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	
	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	
4. 청원에 관한사항	가. 접수			○
	나. 검토 및 보완요구		○	
	다. 처리결과통지(이송)			○
	라. 철회승인 및 반려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	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
	나. 민원검토 및 조사		○	
	다. 타 기관 이송		○	
	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	
	마. 처리결과 통지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의장
		담당	과장	
6. 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가. 경호요청			○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다. 참관의 허가			○
	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	
8. 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
	나. 청가 허가			○
	다.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
	라. 공무국외여행규정 운영			○
	마. 국내·외 출장		○	
	바. 의원의 강의신고			○
	사. 의원의 신분제 관한사항			○
	아. 의원 등록			○
	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	
	차.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의장 포상			○
10.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가. 직원 사무분장		○	
	나. 과장, 전문위원의 근무관리		○	
	다.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연가,휴가 등)		○	
	라. 직원 국외출장		○	
	마. 보안점검일지	○		
	바. 사무과 직원의 추천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의장
		담당	과장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가. 의회예산(안) 편성		○	
	나. 의회예산(안) 제출		○	
	다.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		○	
	라. 공사·용역·물품제조 구매 및 기타예산집행 품의(건당 2천만원 초과)			○
	마. 계약 등 회계집행		○	
	바. 재물조사업무		○	
	사. 물품 수급 및 관리		○	
	아. 의회청사관리		○	
	자. 기념품 및 비품관리	○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	가. 공인 신조			○
	나. 공인 폐기			○
	다. 공인 관리		○	
13. 의정홍보	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
	나. 일반 의정홍보 및 신문사 광고		○	
	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
	라. 의회 소식지 발간			○
	마. 의정백서 발간			○
	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	
	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		○	
14. 문서관리 및 서무등 기타	가. 기록물 관리		○	
	나.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	
	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라. 차량 및 운행관리	○		
	마. 각종대장	○		
	바. 의정종합일지 작성	○		
	사.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
	아.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	

## [전문위원실]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위원장
		전 위 원	전 문 위 원 (사무관)	
1. 위원회 활동 보좌	가. 위원회 의사진행		○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	
	다. 의사진행 보좌		○	
2. 의안의 처리	가. 의안의 검토, 조사 및 자료 작성		○	
	나.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다. 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			○
3. 청원의 처리	가. 검토보고서 작성		○	
	나. 청원 심사결과 보고서안 작성		○	
	다.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